

미나토구가 발주한 공사청부계약 및 업무위탁 장기계속계약은 미나토구 노동환경 확보책 대상입니다! 【노동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주세요!】

수주자는

- 노동관계법령 반드시 준수
- 미나토구가 지정한 최저임금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
- 최저임금 수준액, 신고처를 노동자에게 반드시 고지 등

의 사항이 요구됩니다!

~노동자는 미나토구에 신고 가능~

상기 사항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의의가 있을 경우
노동자는 서면을 통해 미나토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!

【노동자】



【수주자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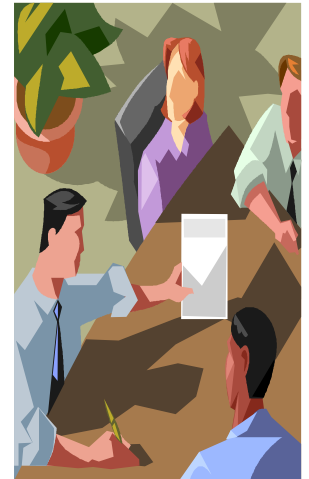
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
노동환경 확보책이 지켜지고 있지
않는 것 같아...

① 신 고

② 조 사

③ 필요에 따라 개선 명령

【미나토구】



우선은 제도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!

대상이 되는 계약 및 최저임금 수준액 등 노동환경 확보책의
상세한 정보는 '노동환경 확보책 안내서'에서 확인해 주십시오.
안내서는 미나토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미나토구 홈페이지: <http://www.cityminato.tokyo.jp>

【문의처】미나토구 총무부 계약관재과 03-3578-2140